2006.

【발제2】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서 장애여성 인권 확보를 위한 제안
- 제8차 UN특별위원회를 앞두고-

김광이(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Ⅰ. 들어가며- 단독조항 제안의 취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한 3차 UN특별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장애여성 조항을 15bis로 제안하였을 때, 1시간이 넘도록 진지하고 뜨겁게 발표되던 각국가의 입장을 기록하며 긴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유독 기억되는 일화가 있다. 대부분의 NGO's[1]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시했었다. 유일하게 한 장애아동 옹호단체에서 참가한 활동가는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유는 장애여성 조항 신설에 대한 논의로 인하여 장애인 내의 다른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개별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장애아동 조항이 불리해질 것을 염려해서였다. 본인은 그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은 상조해야 함을 통역을 통해 설득하였다. 다음날, 그는 배포할 제안문과 영어로 고심하던 본인을 찾아와 "You are win! Your offer is right."라 하며 악수를 청해왔다. 얼마나 또렷이 들리던지.....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큰 기쁨이었다.

이후 IDC에서는 꾸준히 단독조항으로 할 것인가, 모든 관련조항에 추가할 것인가(mainstreaming)에 대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문건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간 회의에서 장애여성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형식에 대한 합의 없이 개별조항에서 간간이 제기되었다. 형식에 대한 논의는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이하 한국추진연대)는 워킹그룹의 초안에 담겨있지 않은 장애여성의 권리를 단독조항으로 신설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각 조항 내에서는 실효적인 조망을 받기 어렵다. 한국적 경험에 의하면 "장애여성"은 지금까지 장애인 범주에서도 여성의 범주에서도 고려되지 못하였다.

1) IDC는 5차특별위원회의에서 본격 구성되었다.

둘째, 각 국가의 이행의무를 끌어내고 실질적 평등을 도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의 내용이 특별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각국의 정부구조와 협력체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어느 하나의 정부부처가 장애여성의 권리 증진을 담당하고 주관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견인역할을 할 하나의 "장애여성"이라는 명칭을 가진 단독조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넷째, 따라서 조약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포괄적이면서 각 국가의 인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여성의 권리가 집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독조항 전체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유보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점진적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조(Article)내의 전체항이 유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제5차~제7차 특별위원회의 동안에 여러 협의의 단계를 거쳐서 현재의 의장안에는 장애여성의 권리가 이중구조방식(제6조와 관련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아래에서는 처음 제기되었던 한국추진연대의 안과 한국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재의 의장안을 검토할 것이다. 의장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나 장애여성의 시각에서는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IDC의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된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의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의 수정 제안

7차 회의 이후 의장안은 두 번에 걸쳐 수정 제안되었다. 8차 회의에서는 현재 의장안에 대한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는 현재의 의장안을 가능한 수용하면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과 단독조항 6조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는 의장안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밑줄로 표시하여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

1. 일반조항

Preamble	서문
(n) Concerned about the difficult conditions faced by persons with	(n) 인종, 피부색, **사회적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및 기타 여러 가

Preamble	서문
disabilities who are subject to multiple or aggravated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gende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age or other status,	지 견해, 국적, 민족 혹은 사회적 출신 성분, 재산, 출생, 연령 및 기타 사회적 지위에 기반해 다중적, 추가적 차별의 대상이 된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며,
(o) Recognising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often at greater risk, both within and outside the home of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their gender based manifestations.	(o)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 안팎의 폭력, 상해 및 학대, 홀대 혹은 홀대적 대우, 부족한 처우 혹은 치료 혹은 착취 등 성별 기반 제반 상황으로 인해 보다 위험한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다는 점을 인지하며
Article 3 General Principles	**3조 일반 원칙들**
(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검토의견 - 서문과 3조 일반원칙은 의장안 지지

Article 8 Awareness raising	8조 인식 개선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dopt immediat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b) To combat stereotypes, prejudices and harmful practic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based on gender and age** in all areas of life;	1. 당사국 정부는 다음의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b)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및 연령에 기반한 편견을 비롯**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장애인에 대한 해로운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의장안 지지

Article 16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 부터의 자유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educational and other measures to	1. 당사국 정부는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 가정 안팎에서 발생하는 **성별 기반 관점을**

Article 16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 부터의 자유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home, from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their gender based aspects.**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States Parties shall als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by ensuring, inter alia, appropriate forms of **gender and age sensitive** assistance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nd caregiv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how to avoid, recognize and report instance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rotection services are age, **gender** and disability sensitive.)	2. 또한 당사국 정부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착취 폭력과 학대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및 보호자들을 위한 알맞은 형태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보조 및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보호 서비스가 연령, **성별** 및 장애 유형에 따라 제공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the physical, cognitive and psychological recovery,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become victims of any form of exploitation, violence or abuse,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protection service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that fosters the health, welfare, self-respect, dignity and autonomy of the person and takes into account **gender** and age specific needs.)	4. 당사국 정부는 보호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양이 되는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 및 심리적인 회복과 재활, 사회로의 재통합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건강, 복지, 자존, 존엄 및 개인의 자율성을 고양시키고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특정 요구를 고려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rticle 16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 부터의 자유
5. States Parties shall put in place effective legislation and policies, **gender** and children specific legislation and policies, to ensure that instance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identified, investigated and, where appropriate, prosecuted	5. 당사국 정부는 **성별**과 아동을 고려한 법제도 및 정책을 비롯한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적재적소에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관련 사례를 확인, 조사하고 때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의장안지지. 서문의 장애여성과 소녀의 폭력에 관한 조항과의 연계성 고려 필요

Article 24 Education	24조 교육
1. States Parties recognise the righ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States Parties shall ensure an inclusive **gender-sensitive education** at all levels and life-long learning **that do not perpetuate social and cultural patterns of conduct of men and women, directed to** **ADD:** **(d) ensur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access and enjoy education on an equal basis in a violence free environment.ct**	1. 당사국 정부는 교육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차별없이 이러한 교육권을 실현하려는 관점에서 당사국 정부는 모든 수준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행동방식 패턴이 영속되지 않도록 여성주의적 관점의** 통합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추가: **(d)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 **검토의견** - 교육은 장애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그 기회가 현저히 떨어짐을 인식하여서, 본 조항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을 받으며 또한 가부장적인 관습에 의해 남녀의 역할이 전형적으로 교육되어지지 않도록 여성주의적 관점의 통합교육에 대한 언급을 제안하고자 함.

Article 25 Health	25조 건강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ealth services **that are gender sensitive** including health-related rehabilitation. In particular, States Parties shall: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국은 의료관련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특별히 각 당사국 정부는 다음을 이행한다.

▷ 검토의견 - 의장안 지지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재생산권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항목은 장애여성 조항 6조에서 포함하고자 하므로 건강 조항에서 다시 언급 할 필요없음

Article 26 Rehabilitation and Hebilitation	26조 재활
1. States Parties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through peer support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ttain and maintain their maximum independence, full physical, mental, social and vocational ability, and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all aspects of life. To that end, States Parties shall organize, strengthen and extend comprehensive **gender sensitive**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health,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services, in such a way that: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립을 달성하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가지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 집단 지원을 비롯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특히 보건,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적인 **여성에게 친화적인**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구성, 강화, 확장해야 한다

▷ 검토의견

여성친화적인 재활서비스 요구

Article 28 Work and Employment	28조 근로 및 고용
ADD new: 1. (j)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enjoy their rights to work on a basis of equality with others	첨가 1. (j) 장애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검토의견

장애여성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 근로와 고용의 권리가 근본적인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요구하고자 함.

Article 28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28조 적절한 사회 기준과 사회보호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ocial [protection], and to the enjoyment of that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including measures: (b) To ensur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the aged with disabilities, to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s	2. 당사국 정부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와,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권리를 장애인이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권리의 구현을 위해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한다. (b) 사회 [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여아, 장애노인의 접근을 보장한다

▷ 검토의견

의장안은 현재 (add)를 표시하여 고려사항으로 되어있음.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여성과 장애노인이 가장 극심하게 빈곤하게 살고 있음으로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노인을 위한 사회프로그램 필요 명시

Article 29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ir political rights and the opportunity to enjoy them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DD: and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equal enjoyment of these rights by women with disabilities**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의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장애여성들의 동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관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
ADD: **(c)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empowered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rough the use of positive measures**	**첨가** **(c) 장애여성들이 적극적인 조치들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하여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보장해야 한다.**

▷ 검토의견

장애여성이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과 동등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적인 생활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Article 30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30조 통계와 자료수집
2.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be **gender, aged -disaggregated** as appropriate and used to help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identify and address the barrier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ercising their rights.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는 **적절하게 분리 수집-성별, 연령별 통계를 의미함-되어야 하며** 본 조약에 속한 당사국 정부의 이행여부 평가를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발표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 검토의견

장애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실시함에 있어서 성별통계가 매우 중요함

2. 제6조 살리기

위의 일반조항에 포함된 내용들을 고려하여도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들은 간과되기 쉽다. 단독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처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제6조는 단독조항으로 살리기 위한 여성과 장애가 중첩되어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특화된 언급이 필요하다. 아래의 1항과 3항은 IDC 내 여성그룹의 제안이며, 2항은 한국추진연대의 여성위원회의 제안으로 작성되었다.

Article 6 Women with disabilities	6조 장애여성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and face particular disadvantages on the basis of the interactive effect of their gender and disability throughout the life span, and undertake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ensure their equa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 각국 당사국들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전 생애를 걸쳐서 그들의 여성과 장애로 말미암아 가중적인 불이익에 직면해 있음을 인지하여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State Parties should ensure that all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rights to making their own decision freely from discrimination, forcible atmosphere and violences in all terms of reproduction including pregnancy, delivery(childbirth), sex life and guarantee the support of information, education and other necessar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gender sensitive ways.	2. 각 국 당사국들은 장애여성이 임신, 출산, 성생활 등 재생산권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강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의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을 지원해야 한다.
3.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to women with disabilities equal enjoyment of rights set out in this Convention and, for this purpose, shall take foused, gender sensitive measures to enable women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freedom, safety and autonomy and to ensure the full advancement and development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3. 각 국 당사국들은 이 조약을 통해 장애여성의 평등한 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여성이 자유롭고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성주의적 정책을 실시함에 주안점을 두고,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완전한 증진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 검토의견

의장안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분석되며 각 국 당사국들이 장애여성에 관한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이에 한국장애인권리조약추진연대 여성위원회는

1.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전 생애에 걸쳐 "장애"와 "여성"이라는 가중된 차별의 역학작용 속에서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음을 명시하고, 각 국 정부가 장애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정책을 실시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은 여성으로서 고유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각 국 정부가 차별과 폭력 그리고 학대 없이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6조에 포함시켰다.

3. 궁극적으로 본 권리조약에서 장애여성의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위해 에 관한 각 국 정부의 노력에, 장애여성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여성의 발전과 증진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III. 나오며

한국정부안에는 협의조정자의 제안문을 받아 제4조 일반의무에도 각 당사국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에 있어서 성주류화 관점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협의조정자는 현재의 의장안 제6조와 비슷한 요점으로 제4조 국가의무조항과 제6조를 이중제안하여 논의에 부친 바 있다. 의장안에는 일반의무조항에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혹은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정부안이 축약적이며 포괄적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의무조항을 만들어져 바람직하게 여겨지나, EU를 포함함 일부 국가들은- 결코 만만치않은- 일반조항들과 일반의무조항에 장애여성의 권리를 명시할 것을 여전히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

국가의 일반의무조항에는 현재의 제6조의 정도만큼도 언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려된다. 이는 일반조항에서 주류화가 강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논의가 끝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추진연대 여성위원회는 제6조에 위에서 제안한 3개의 항을 주장하고, 제4조 국가의 일반의무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항은 상황적 경우에 따라 한국정부안과 같은 정도의 언급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성주류화의 방식인가, 특별한 단독조항인가에 대한 선택은 국제조약이라는 법률적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국제조약이 각 국가 내에서 이행되는 방식, 그 보호 대상의 현실 심각성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있어서 최상의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검증을 미리 받을 수도 없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관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장애여성조항에 시동을 건 한국의 장애여성 당사자들에게 인적 물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해서 그 활동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장애여성들은 영어로 인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활동의 당위성과 운동성은 장애여성 당사자의 경험과 직관적 의견들이 보태어져서 정당성을 더한다. 현재는 위에 나열한 이유들로 단독조항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독조항 성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혹은 보다 장애여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성주류화 방식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경험과 보다 법과 정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속의 장애여성, 그 시작은 한국의 장애여성들이었고, 그 끝은 세계의 장애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이 될 것을 기원하고 있다. 국제조약의 제정은 각 국의 장애여성들에게 장단기에 걸쳐 삶의 질을 점차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역사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의 한국정부대표단의 활동에 감사하면서, 제8차 특별위원회의에서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지지를 바란다.

[별첨]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의 장애여성 관련 Facilitator안 (Twin Track Approach)

Preamble

n bis) Recognising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often at greater risk, both within and outside the home of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their gender based manifestations.

Article 6 Women with Disabilities

1. State Parties recognis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and that focused, empowerment and gender sensitive measure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by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2. State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equal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e enjoyment of all rights set out in this Convention.

Comment: This text could be either placed in a paragraph under Article 4 (General obligations) or it could be in Article 6.

Article 8 Raising Awareness Regarding Disability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dopt immediat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b) To combat stereotypes, prejudices and harmful practic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based on gender and age** in all areas of life;

2. Measures to this end include:

(d) Promoting awareness training programmes regar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ights **taking into account gender and age specific aspects of disability.**

Article 16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educational and other measures to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home, from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in particular that directed to girls and women including their gender based aspects.**

2. States Parties shall als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by ensuring, inter alia, appropriate forms of **gender and age sensitive** assistance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nd caregiv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how to avoid, recognize and report instance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States shall ensure that protection services are age, gender and disability sensitive.**

3.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facilities and programmes designed to serv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ffectively monitored by independent authorities.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the physical, cognitive and psychological recovery,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become victims of any form of exploitation, violence or abuse,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protection service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that fosters the health, welfare, self-respect, dignity and autonomy of the person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that fosters the health, welfare, self-respect, dignity and autonomy of the person **and takes into account gender and age specific needs.**

5. States Parties shall put in place effective **gender and age sensitive** legislation and policies to ensure that instance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identified, investigated and, where appropriate, prosecuted.

Article 23 Respect for the Home and the Family

(b) That the right of all **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who are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on the basis of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is recognized [and that spouses should be equal partners];

[(c)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nd to have access to information, reproductive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the means necessary to enable them to exercise these rights and the equal opportunity to retain their fertility **on a basis of equality with respect to gender and disability** to the extent that these are permitted by national laws of general application].

Article 25 Health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gender sensitive** health services, including health-related rehabilitation. In particular, States Parties shall:

b) bis) develop and disseminate policies and programs in fields such as family-planning and parenthood,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natal period, that are inclusiv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protect them against any form of coercive treatment, including sterilization.

Article 31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1. Where necessary, States Parties undertake to collect appropriate information, including statistical data, to enable them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o give effect to this Conven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maintaining this information should:

(add before a)

(0) involve both men with disabilitie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organisations in the design of relevant indicators an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data;

(0.1) enable States Parties to disaggregate all data on the basis of sex and age and ensure that the data provides information on issues that may affect differently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men and boys with disabilities

Article 33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maintain, strengthen, designate or establish at the national level a framework to promote, protect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including focusing on gender and age specific issues.**

3. Civil society, in particular **men and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organizations, shall be involved and participate fully in all levels of the monitoring process.

International Monitoring

Proposals are based on the discussion text, which was not yet available at the facilitator's meeting

Article 39 Reporting by States Parties

2.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a first, comprehensive, **gender and age sensitive** report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CRC, article 44.1). States parties shall submit further reports upon request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issues or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to be addressed by States parties in these reports (OHCHR background paper, paragraph 37).

Article 44 -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and bodies

3.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CRC, article 45, chapeau) the relevant organs, offices and specialized agencies and funds of the United Nations, in particular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and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se organs, offices and specialized agencies and funds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may invite them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CRC, article 45(a))